

보험중개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유 주 신**

<차례>

- | | |
|--------------------------|---------------------------------|
| I. 서론 | IV. 보험중개사 관련규정의 체제정비와 보완
필요성 |
| II. 보험중개사의 개념 | V. 결론 |
| III.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의무 | |

주제어 : 보험중개자, 보험계약법,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의 개선방안, 보험중개사의 권리와 의무

<국문초록> 우리나라 보험 산업은 날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보험 상품이 보험자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보험모집조직이라고 하는 중개자의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보험계약의 체결은 실제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중개 또 이들에 의한 조력 하에 계약이 체결된다. 그런 면에서 보험중개자는 보험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한 보험시장에 걸맞게 보험모집조직의 법률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는 독립된 상인으로 이해되며, 보험계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청구권 및 보험자와의 특약에 의해 기타의 권리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험계약을 위한 독립성이라고는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른 모집조직과 달리, 보험중개사는 개인보험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보험이나 재보험을 다룬다. 보험중개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관련 법률에 입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계약관계를 다루는 보험계약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보험중개사에 대한 정의가 보험계약법에 규정되어야 하며, 보험중개사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한 사항도 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계약법에 두는 것이 가장

* 본 논문은 2013년 5월 24일 한국보험중개사협회에 제출한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쟁점사항과 개정방향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 가운데 본인이 집필한 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 논문접수일(2016.11.20), 심사개시일(2016.12.20), 게재확정일(2016.12.26)

합당하겠지만, 보험업법이나 보험업법시행령에 우선적으로 입법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중개사의 보험료 수령권 인정 여부, 보험중개사의 고지 수령권과 통지 수령권의 부여, 보험금 수령권 및 기타 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위임여부에 따라 일정한 권리의 인정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중개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영국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보험의 전문가집단으로 보험중개사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리의 수여가 필연적이라 하겠다. 다만, 그 권리의 수여에는 반드시 책임이 뒷받침되는 내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우리나라의 보험판매채널은 직급영업조직, 모집인 조직 및 대리점조직 등과 같이 보험회사에 고용되거나 대리행위를 위탁받은 보험회사 측의 대리인제도로 구성되어 왔다. OECD가입 후 보험중개사제도의 도입은 종전의 판매채널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획기적인 제도이다.¹⁾ 동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보험 산업의 질적 향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감이 충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중개사제도의 도입이 비록 OECD 가입 시 관계당국에 의한 시장 개방의 압력이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정보화의 발전·규제완화기업의 국제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재보험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보험중개사와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다양한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험중개사제도의 필요성 때문에 보험중개사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대한 요망이 있었다.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조직의 개관을 통하여 본 보험중개사는 보험사업자를 위한 업무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개한다. 즉, 특정 보험사업자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보험사업자의 보험 상품들을 취급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을 원하는 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의 계약을 증개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를 대리하는 보험중개사제도는, 비록 우리가 비교적 늦게 도입하였지만, 이미 세계 주요 나라들에서 실시·정착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험중개사제도는 보

1) 보험모집조직으로서 영국에서 발전된 broker는 일반적으로 보험중개인이라고 용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중개인이라는 용어보다 보험중개사로 통일되어 사용되는데, 이하 'broker'에 해당하는 용어는 '보험중개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보험중개사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험시장에 있어서 소비자 중심시장으로의 전환, 보험계약자의 협상력을 증대하는 기능,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보험 상품에 대한 선택권의 확대, 다양한 모집조직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할, 보험회사의 선진기술력 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험중개사제도의 도입초기와 별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보험중개사제도의 내용 전반에 대한 고찰, 법적 성격, 외국의 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행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동 제도가 당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동시에, 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보험중개사의 개념

1. 중개

상법 제46조는 기본적 상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은 영업으로 상법 제46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상행위로 인정한다. 영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²⁾ 영리성을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인 영리의 목적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외부에서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상법에서 중개라 함은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교섭하여 그들 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력하는 행위를 말한다.³⁾ 중개 그 자체는 사실행위이나 이것을 인수하는 것은 영업적 상행위에 속한다(상법 제46조 11호). 상법상 중개의 모습은 광의의 의미에서 다양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중개업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매매, 해상보험, 해상운송의 거래관계의 행위 등을 하는 상사중개인이 있다(상법 제93조). 둘째, 위탁매매인을 들 수 있다. 자기명의와 타인계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주선업에는 위탁매매인(상법 제101조 이하), 운송주선인(상법

2) 유주선, 「상법」, 형지사, 2016, 54면.

3)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제14판, 2016, 484면.

제114조 이하), 준위탁매매인(상법 제113조)⁴⁾ 등이 활동한다. 대리상에서도 중개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리상 가운데 중개대리(상법 제87조)는 대리인이기는 하지만, 중개만을 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협의의 의미에서 중개는 상법 제93조에 정한 상사중개인의 행위를 의미한다.

2. 상사중개인

상사중개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 그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자가 바로 상사중개인이다. 상행위 이외의 혼인이라든가, 취업에 관련된 사항 또는 부동산 매매 등의 행위를 중개하는 자는 민사중개인에 해당한다. 민사중개인도 상법 제46조 11호와 상법 제4조에 의하여 상인 자격을 갖게 된다. 중개에 관한 행위, 즉 중개계약은 영업적 행위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일 것을 요하며 그 성질은 위임이다.

상법 제93조는 상사중개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사중개인은 양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른바 중립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져야 한다. 상법상 상사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누구로부터도 위탁을 받을 수 있고 위탁자 또는 그 상대방 중 한 쪽이 상인이면 충분하다. 또한 상사중개인은 양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각 계약당사자로부터 약정된 보수나 수수료를 청구하게 된다.

3.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의 중개행위는 당사자 일방인 위탁자가 상행위의 중개를 위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탁자인 보험중개사의 특약이나 약속에 따라 그 성질을 달리할 수 있는 위임계약의 일종이다. 즉, 특약에 의해 중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는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고, 중개를 약속한 때에는 도급계약이 된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거래의 중개를 하는

4) 영화에 대한 국내배급대행계약이 준위탁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가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경우에는 중개대리상이 되므로 이런 행위는 보험중개사의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중개사는 특약이나 약속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상의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의무(민법 제681조), 상법상 위임(상법 제49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하여야 하며, 위임의 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는 있다.⁵⁾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인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11호).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 역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⁶⁾, 원칙적으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⁷⁾ 다만, 보험계약자 편에서 그가 직접 보험계약에 대한 조건을 원하는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체결조건에 관한 다양한 조언을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⁸⁾

보험중개사는 단순히 계약의 체결만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행위를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보험자를 위하는 것 대신에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조언을 하고 협력을 하는 입장에서 서 있다. 상사중개인과 보험중개사는 양 당사자 중 한 쪽이 상인인 상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점과 위탁자를 불특정다수로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위탁자가 항상 상인이 아닌 보험계약자라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상사중개인과 달리, 보험중개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로부터 수수료 형태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점에서 보험중개사는 상법상의 중개상과 차이가 있다.

5) 김기홍 외 3인 공저, “보험중개인의 이론과 실무”, 『일지사』, 1997, 157쪽.

6) 유주선, “보험모집조직에 관한 법률적 문제-모집조직에 대한 전망과 입법적 개선과제를 포함하여”, 『사한국보험법학회 2012년 춘계학술발표회』, 2012. 4. 27, 37면 이하에서 보험중개사를 중심으로 보험모집조직을 고찰하고 있다.

7) 뉴욕주 보험법의 경우 보험중개사는 소정의 보수나 수수료를 받고 자기 외에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 교섭 또는 주선하거나 위험의 판정 또는 보험가입에 노력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제2101조).

8) 유주선·최병규·김은경,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쟁점사항과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연구보고서』, 2013, 19면 이하.

4. 상사중개인과 보험중개사의 차이

우리 상법 제93조는 중개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개상과 보험중개사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⁹⁾

첫째, 중개상과 달리 보험중개사는 단순히 계약의 체결만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중개상이 양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반면에, 보험중개사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조언을 하고 협력을 하는 입장에서 서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⁰⁾

셋째, 상법상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누구로부터도 위탁을 받을 수 있고 위탁자 또는 그 상대방 중 한 쪽이 상인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보험중개사는 양 당사자 중 한 쪽이 상인인 상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점과 위탁자를 불특정다수로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위탁자가 항상 상인이 아닌 보험계약자라는 점이 다르다.

넷째, 양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한 경우 중개상은 각 계약당사자로부터 약정된 보수나 수수료를 청구하게 된다.¹¹⁾ 그러나 중개상과 달리 보험중개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로부터 수수료 형태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점에서 보험중개사는 상법상의 중개상과 차이가 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직접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법상 중개상과 차이가 없으나, 보험중개사의 위탁자는 항상 경제적 약자인 보험계약자라는 점에서 중요한 구별이 된다. 경제적 약자인 보험계약자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위탁중개인이 보험중개사이고 쌍방중개인이거나 일방위탁중개인이 불분명한 경우 쌍방위탁중개인으로 추정하게 되는 자가 상사중개인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9) 최선웅, “보험중개인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1, 24면 이하.

10) 맹수석, “보험중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제53호, 한국보험학회, 1999, 203면.

11) 김영국,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8호, 한양대법학연구소, 2005, 310면.

III.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의무

1. 보험 모집권한 등의 여부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 제11호)로서,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보험업법 제83조 제3호). 보험계약의 중개권한이 있다는 점은 보험중개사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보험모집권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¹²⁾ 모집이라 함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를 포함하여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¹³⁾ 보험료는 책임개시의 요건이 된다(상법 제656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자이다.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나 환급할 수 있는 권한의 인정필요성이 주장하고 있지만,¹⁴⁾ 우리 실정법은 보험중개사는 보험료의 수령이나 환급 등에 관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보험업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호).

2. 고지, 통지 수령권한 여부

보험계약법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체결 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상법 제651조), 보험기간 도

12)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첫째, 보험중개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다. 둘째,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별로 해당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주요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과 거래상황(각 사업연도의 주요 보험회사별 수수료,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을 포함한다)이다. 셋째, 보험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의 명단이다.

13) 최초보험료에 대하여는 유주선, 「보험법」, 청목출판사, 2013, 222면 이하, 계속보험료에 대하여는, 240면 이하.

14) 김영국,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8호, 한양대법학연구소, 2005, 317면.

중에 위험이 변경 증가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변경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52조).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 수령권한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보험중개사는 고지와 통지의 수령권한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¹⁵⁾

3. 계약상 채무이행 의무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체결을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자와 보험중개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보험중개사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중개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¹⁶⁾ 또한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보험중개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보험계약자는 영업보증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¹⁷⁾

4. 결약서 등 장부작성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92조 제1항 전단). 상법 제96조에 따라 작성되는 장부를 결약서라고 한다.¹⁸⁾ 상법은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제96조 제1항). 이는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과 내용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결약서는

15) 조혜원, “보험중개사 역할 재정립 필요”, 『주간보험이슈』 제105호, 보험개발원, 2007, 2면.

16) 민법 제390조 이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7)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첫째, 영업보증금의 예탁금액 및 예탁방법이다. 둘째, 보험중개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 및 가입금액과 주요 내용이다. 셋째,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8)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16;; 유주선, 『상법』, 형지사, 2016, 382면 이하.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증거의 방법으로서 작성되는 것이므로 창설적 효력이 있다거나 계약의 실제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 계약을 즉시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명날인을 하는 것도 아니므로 거래의 실무상 작성하는 계약서와는 그 성질이 다른 면이 있다. 장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25조)이다.¹⁹⁾

보험중개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부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등을 기재해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보험중개사가 수령하는 금원은 수수료나 보수 등이 될 수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중개를 이행하고 수령하게 되는 금원인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 모두를 장부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 자기계약의 금지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01조). 이를 자기계약이라고 한다.²⁰⁾ 보험업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전문적인 보험모집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이다.²¹⁾ 자기계약이 제한 없이 허용되면 보험계약자들은 자기의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자기 등을 위한 모집은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50%를 초과하게 된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보험중개사가 보험업법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보험업법 제90조 제1항 제4호).

19) 결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① 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② 보험중개사의 등록번호 ③ 인수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④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수취하여야 할 자의 상호 또는 명칭, 성명 ⑤ 보험계약체결일 ⑥ 보험계약의 종류 및 그 내용 ⑦ 보험의 목적 및 그 기액 ⑧ 보험가입금액 ⑨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및 ⑩ 보험료 및 그 납부방법 등이다.

20) 자기계약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124조, 상법 제398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 성대규 안종민, 「한국보험업법」, 도서출판 두남, 2014, 336면.

6. 설명의무, 공시의무 및 계산서제출의무

(1) 설명의무

보험계약을 중개할 때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²²⁾ 첫째, 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둘째,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셋째,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넷째, 보험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 다섯째, 총리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²³⁾

(2) 공시의무, 계산서류 제출의무

보험중개사는 비치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보험중개사는 매년 12월 31일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폐쇄일부터 2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법인에 한한다)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독일 보험계약법에는 이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60조 제2항 참조.

23) 총리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이 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첫째,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언을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둘째, 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셋째, 보험계약자 등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계약의 유지·관리 및 보험금 처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로 인하여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넷째,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얻은 보험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전달한다. 다섯째, 보험계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보험안내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만을 적거나 광고하고,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적거나 광고하지 아니한다. 여섯째, 위의 다섯 가지의 내용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7. 경업금지의무, 손해사정 등 금지의무

(1) 경업금지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사한다는 보험중개사의 본질과 맞지 않다. 이행상충이 발생한다.²⁴⁾ 이 경우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를 의미한다. 법인인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업무를 겸하지 못한다. 보험중개사는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보험설계사 등과는 차이가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다.

(2) 손해사정 등 금지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하여 영위하지 못한다.²⁵⁾ 보험중개사가 소액보험사고의 손해사정업무를 취급하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전면 겸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지나친 면이 있다.²⁶⁾ 다만, 보험계리업무는 주로 보험회사를 위한 업무이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의뢰업무를 취급하는 것이므로 이해상충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하겠다. 보험업법 제92조 제2항 후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보험중개사 모두에게 적용된다.

8. 일정한 업무교류 금지의무

보험중개사는 겸업이 금지되는 대상과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²⁷⁾ 상호출자, 금전, 물품, 정보 등의 편의제공과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사무실이 동일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 고객에게 같은 사무실이라고 하는 혼동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사무실 공동사용이나 업무보조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하는 인사교류 등이 금지대상에 해당한다.

24) 보험업법 제92조 제2항 전단. 임원의 겸직금지에 대하여는 성대규 안종민, 「한국보험업법」, 도서출판 두남, 2014, 160면 이하.

25) 보험업법 제92조 제2항 후단.

26) 같은 입장으로는 한민영·신호철, “일반손해보험의 도약을 위한 보험중개사의 역할과 법적 쟁점”, 사)한국보험법학회 제54회 보험판례연구회 자료집, 2016년 8월 29일, 16면.

27) 보험업법 제92조 제2항.

IV. 보험중개사 관련규정의 체제정비와 보완 필요성

1. 기본방향

상법 보험편은 보험계약에 관한 다양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보험의 소비자로서 보험계약자는 일반 개인소비자로서 보험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경제적 약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개인보험의 경우는 경제적 약자와 경제적 강자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상법은 보험계약자의 후견인으로서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면을 강하게 띠고 있다.²⁸⁾

보험중개사는 주된 영업을 개인영업에 치중하고 있는 모집조직이 아니라, 기업보험이라든가 재보험의 영역에서 활동영역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²⁹⁾ 기업보험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라는 기업과 또 다른 기업이 보험회사의 거래당사자로 등장하게 된다. 이 양 계약당사자의 계약체결을 도모하는 자가 바로 보험중개사라고 한다 면, 개인보험에서 적용되도록 규정된 입법사항들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³⁰⁾

보험중개사제도는 영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에서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시행되었고, 또 발전을 거듭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중개사제도가 도입된 지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그리 큰 발전을 이루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보험중개사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중개사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보험자보다는 보험계약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적 지위에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³¹⁾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식상 중립적인 위치에 존재하지만, 보험의 이용자인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가장 적절한 상품을 그에게 권유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개정방향의 출발점은 보험중개사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의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습득과 보험자의 보험계약 체결의 용이성을 위하여 다양한 모집조직을 인정하고 있

28) 우리 상법 제663조를 참조

29) 한만영·신호철, “일반손해보험의 도약을 위한 보험중개사의 역할과 법적 쟁점”, 사)한국보험법학회 제54회 보험관계연구회 자료집, 2016년 8월 29일, 3면 이하.

30) 유주선, 「보험법」, 청목출판사, 2013, 152면 이하.

31)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제5판, 2004, 96면 이하.

다. 개인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설계사 외에, 우리나라에서 보험중개사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³²⁾

2. 보험중개사에 대한 입법 방향

(1) 보험설계사와 차별성 고려

보험업법은 다양한 보험모집조직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결과 보험설계사라고 보험모집조직에 의하여 보험영업을 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조직을 통하여 보험시장이 성장한 것에 대하여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 해당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로 개인보험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반면에 보험중개사는 원칙적으로 개인보험을 취급하는 보험모집조직이 아니다, 기업보험이라든가 재보험 등을 취급하게 된다. 보험모집조직을 규율하고 있는 보험업법이나 보험업법시행령 등은 이 점을 명심하여 입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상법상 중개인과 차이점 고려

보험중개사는 상법상 중개인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³³⁾ 상법상 중개인은 단순히 해당 계약의 체결만을 중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보험중개사는 체결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관리까지 그 업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사중개인은 계약의 양 당사자를 공정하게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다.³⁴⁾ 이른바 중립성의 원칙이라든가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일방 당사자만의 이익을 보호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보험중개사는 상관습법상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과 그 관리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상법상 중개인과 차이가 있다. 또한 상법상 중개인의 경우 계약의 양 당사자의 이익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각각

32)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1, 99면 이하.

33) 정준우, “보험중개인의 법적 지위와 그 개선방안”, 「비교사법」, 제1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741면 이하.

34)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제13판, 2015, 482면.

해당되는 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중개사는 성립된 계약을 토대로 하여 단지 보험자에게만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³⁵⁾ 상법상 중개인과 보험중개사가 위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상사중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을 규정을 보험중개인에게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업법이나 보험업법시행령 또는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에 상법상 중개인과 다른 규정을 입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내용개정과 입법형식

보험업법시행령 제41조는 보험중개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보험중개사 권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시행규칙에서 일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24조).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보험업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찰해 보아야 할 내용은 제1호에 대한 사항이다. 제1호는 “보험중개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제1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발급하고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보험중개사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제약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보험중개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개선되는 사항은 보험업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입법하는 대신에 상법 보험편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³⁶⁾

(4) 보험중개사 특성 고려

보험중개사제도가 가장 발달한 국가인 영국의 경우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35) 김은경, 보험중개인의 권한의 범위와 보수청구권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 485면 이하.

36) 최병규, “보험모집보조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독 비교연구”, 「기업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0, 329면 이하.

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한 조건에 타당한 보험자를 찾는 자에 해당한다.³⁷⁾ 다수의 보험자 가운데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에 합당한 보험자를 선택하여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을 조력한다는 의미에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험자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인(Agent)과, 보험계약자를 대리하는 보험중개사(Broker)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³⁸⁾ 독일의 경우 역시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의 대리인이 아니다.³⁹⁾ 일본의 경우는 영국이나 독일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험중개사를 단순히 상행위를 매개하는 상사중개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를 위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문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자의 대리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권을 행사함에는 무리가 없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실정법에 명문화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험계약법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

(1) 보험료 수령권한

실정법은 보험료의 수령이나 환급 등에 관한 권한을 보험중개사에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험중개인에게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중개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보험계약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에게 보험료수령 권한인정의 필요성이

37) 일찍이 브로커제도를 연구한 자료로는 이필규, “영국 보험 브로커(Broker, Makler) 제도와 그의 활동”, 「보험연구」, 대한손해보험협회, 1963, 12면 이하.

38) 이필규, “독일 보험계약법상의 보험대리인: 독일 보험계약법(VVG) 제43조를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23호, 한국보험학회, 1984, 97면 이하.

39) 독일의 보험을 감독하는 보험감독관청의 지침에 따르면, “보험중개사는 그 스스로 매개한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보험자를 대리하여 서명하는 것은 중개인, 대리상,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모순된다. 만약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보험중개사는 사실상 서명권한을 갖는 대리상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보험중개사와 대리상의 구별이 어려워진다. 보험중개사가 보험자를 대리하는 것은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를 위한 존재라는 그 본연의 사실과도 조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칙적으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다.

있다.⁴⁰⁾ 보험중개사의 지위와 기능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2) 고지와 통지 수령권한

상법 제651조와 제652조는 보험계약 체결 전이나 체결 후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이나 보험업법시행령은 보험중개인에게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체결 전 의무로서 고지사항이라든가 보험사고 후 이행해야 할 의무인 통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보험자와 보험중개인 사이에 고지나 통지 수령권한에 대한 위임이 존재한다고 하면, 굳이 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⁴¹⁾ 실제로 보험자가 고지나 통지 수령권한을 보험중개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고도의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보험중개사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보험업법이나 시행령에서 양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보험금 수령권한

보험계약관계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보험중개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금수령의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하면, 당연히 보험중개사 역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⁴²⁾ 보험계약법이나 보험업법은 이 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0) 한만영·신호철, “일반손해보험의 도약을 위한 보험중개사의 역할과 법적 쟁점”, 사)한국보험법학회 제54회 보험판례연구회 자료집, 2016년 8월 29일, 14면.

41) 김은경, “보험중개인의 권한의 범위와 보수청구권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0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 486면.

42) 김영국,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8호, 한양대법학연구소, 2005, 318면.

(4)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모집조직이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보험중개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경우, 보험중개사는 계약갱신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만기표소유권(ownership of expiration)을 보험중개사에게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일부의 손해사정권을 보험중개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물음 역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⁴³⁾ 우리의 경우 보험중개사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낮은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보험중개사에게 손해사정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공동보험 취급 금지 관련 사항

(1) 의의

보험업감독규칙 제4-22조는 보험중개사의 모집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할 수 없다(제2항). 보험업감독규칙은 보험중개사는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2) 개정 필요성

보험업감독규칙 제4-22조에 따라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취급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일부를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⁴⁴⁾ 이 경우 보험중개사는 계약의 100%를 취급하지 못할 경우에

43) 한만영·신호철, “일반손해보험의 도약을 위한 보험중개사의 역할과 법적 쟁점”, 사)한국보험법학회 제54회 보험판례연구회 자료집, 2016년 8월 29일, 14면.

는 동 보험계약을 전혀 취급하지 못한다. 기존의 보험 모집 조직은 모두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조직이며,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보험중개사이다. 보험계약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험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간에 공동 취급은 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보험중개사만이 공동으로 보험의 중개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보험중개사를 역차별의 문제점에 해당한다.⁴⁵⁾ 보험중개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모든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취급해 왔다. 보험중개사제도가 도입한 이상, 동 규칙은 개정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계속 존재하는 한, 보험중개사의 보험 시장의 진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5. 자기대리점 규제 강화

(1) 현행

보험업법 제101조는 자기계약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제2항).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전문적인 보험모집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에 해당한다.⁴⁶⁾ 만약 자기계약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이를 허용한다면,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

44) 유주선·최병규·김은경,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쟁점사항과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연구보고서, 2013, 28면.

45) 한만영·신호철, 일반손해보험의 도약을 위한 보험중개사의 역할과 법적 쟁점”, 사)한국보험법학회 제54회 보험관계연구회 자료집, 2016년 8월 29일, 5면.

46) 성대규·안종민, 「한국보험업법」, 도서출판 두남, 2014, 416면.

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2) 문제점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배를 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거나 활용을 하여, 자기계약을 처리하는 부적절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사실상 자기의 통제 하에 있는 자기대리점이나 중개회사로 집중하여 처리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시장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⁴⁷⁾ 또한 자기대리점이나 자기 중개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대부분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자기물건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고의적으로 보험계약 등에 대한 부실한 판정을 함으로써 대형사고의 발생 시 비례보상, 초과보험 등으로 보험회사와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3) 개선방안

현행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를 자기계약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금지함으로써 규제를 하고자 한다.⁴⁸⁾ 어떠한 기준에서 50%라고 하는 범위를 입법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분명치 않다. 여기서 50% 초과기준은 자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50%를 넘지 않더라도 자기계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⁴⁹⁾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대리점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그

47) 유주선·최병규·김은경,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쟁점사항과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연구보고서, 2013, 30면.

48) 일본 보험업법 제295조는 우리나라 보험업법 제101조와 유사하게 자기계약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49) 성대규·안종민, 「한국보험업법」, 도서출판 두남, 2014, 417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규정의 목적이 보험모집조직의 전문성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보건대, 그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판단된다.

6. 계약서 교부의무의 실익 여부

(1) 현행

보험업법시행령 제41조는 보험중개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92조(보험중개사 등의 의무)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중개사는 상법 제96조에 따른 작성·교부되는 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지사항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4-25조는 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점

보험중개사는 보험청약서와 보험증권에 보험의 취급자로서 서명하고 날인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서교부의무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법 제96조 제1항은 중개상이 계약이 성립한 한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⁵⁰⁾ 중개인에게 적용되는 상법 제96조의 계약서의 교부의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보험계약성립의 사실과 내용의 확인은 보험청약서와 보험증권으로 충분한 바, 계약서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보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청약서와 증권이 입증의 근거서류로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¹⁾ 또한 보험료가 수납되지 않으면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발행은 실익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⁵²⁾

50)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제13판, 2015, 484면.

51)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인수보험계약대차청산협정(감오조 6211-35)에 따라 공동인수 간사 보험회사가 보험청약서 및 보험증권 발행 및 보험료나 보험금 수수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의 발행이 수일 내에 이루어진다.

52)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의 경우에는 공동인수 시 각 보험회사는 개별적으로 보험증권을 발행하고, 보험료나 보험금 수수를 하기 때문에 계약서 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3)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발달되어 있는 민사중개인으로서 부동산중개인이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서라는 단 한 건의 문서에 의하여 종결된다. 보험중개사의 경우, 상법상 상사중개인에게 인정되고 있는 계약서 교부의무는 필요치 않다.⁵³⁾ 보험업법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25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중개사에게 부과되어 있는 계약서교부의무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7. 보험료 협상권, 청구권 대행, 겸업 허용

(1) 현행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제92조에 보험중개사의 의무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항). 또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사업자, 보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보험모입인,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하여 영위하지 못한다(제2항).

(2) 개선방안

보험중개사의 권리로서 청구권을 대행할 수 있음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보험중개사의 본연의 권리인 보험료협상권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험중개사의 제도 인정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⁵⁴⁾ 겸업허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험업법 제92조 제2항은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⁵⁵⁾ 이는 실무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보

53) 유주선·최병규·김은경,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쟁점사항과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연구보고서, 2013, 32면.

54) 한만영·신호철, “일반손해보험의 도약을 위한 보험중개사의 역할과 법적 쟁점”, 사)한국보험법학회 제54회 보험관계연구회 자료집, 2016년 8월 29일, 4면. 보험요율의 산출과 기업의 위험을 파악하여 보험계약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중개사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겸영금지 조항을 폐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독립된 조직인 보험중개사의 본연의 업무를 행하여지도록 해야 한다.⁵⁶⁾ 특히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주 수입원이 보험회사에 달려 있는 단지 손해사정사에게만 의뢰하도록 한다면, 구조적으로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편중될 수 없다. 보험계약자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질 높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조항의 폐지는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8. 보험중개사의 국·공기업 보험 입찰배제의 폐지

(1) 현황

현재 국가기관 및 유관단체는 보험계약을 체결을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경쟁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⁵⁷⁾ 그런데 이 법률과 이법시행령을 보면, 국·공기업의 보험입찰 시 오직 보험회사만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중개를 할 권한이 부여된 보험중개사에게는 참여권한이 배제되어 있다.⁵⁸⁾ 보험용역입찰도 여타 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자입찰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에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 또는 공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본사에 한함)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문제점

이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를 충족하는 보험중개사의 입찰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전문가로서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험설계와 보험회사의 비교분석, 요율협상 등

55)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는 성대규·안종민, 「한국보험업법」, 도서출판 두남, 2014, 339면.

56) 김영국,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8호, 한양대법학연구소, 2005, 318면.

5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를 참조.

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보험중개사의 입찰이 허용되지 않고, 보험회사(공제조합)에게만 참가 자격을 주어 국가기관의 보험관련 이익의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⁵⁹⁾ 이는 보험계약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되지 않은 방법으로서, 국가기관의 보험수요를 충족하고, 더 나아가 효율적인 보험업무를 위하여 위 법령에서 보험부문에 관하여 보완 할 필요성이 있다.

(3) 개선방안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보험중개사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③ 보험용역의 경우 보험중개사의 활용이 이 법의 목적에 더 부합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보험중개사에게 입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입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⁶⁰⁾ 또한 수의 계약의 확대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서 ①항 ‘6. 계약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의 결여로 국가의 손실이 현저히 우려되는 보험영역 계약의 경우’를 새롭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상법 보험편은 보험계약관계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험계약과 관련된 법률적인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보험계약의 체결을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보험계약법이 보험중개자라는 새로운 장(章)을 만들어 보험대리인과 보험중개인을 계약법에 포함시켜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보험중개사는 상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상시중개인과

59) 동 법률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허연·전우현, “국가 및 공공단체 보험계약의 전문적 Risk 관리를 위한 보험중개사의 역할”,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연구용역보고서, 2014, 19면 이하.

60) 유주선·최병규·김은경,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쟁점사항과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연구보고서, 2013, 34면.

차이가 있다. 보험업법이나 관련 규칙 또는 시행령에 보험중개사에 대한 내용이 일부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다. 보험중개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보험계약법에 규정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험자와 보험료를 협상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험중개사에게 보험료 협상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보험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비단 보험계약의 중개역할에 한정되어야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에 대한 체결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토대로 하여,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체결 권한 등을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기홍 외 3인 공저, “보험중개인의 이론과 실무”, 「일지사」, 1997.
- 김영국,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8호, 2005.
- 김은경, “보험중개인의 권한의 범위와 보수청구권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0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
- 맹수석, “보험중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제53호, 한국보험학회, 1999.
-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1.
- 성대규 안종민, 「한국보험업법」, 도서출판 두남, 2014.
-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제5판, 2004.
- 유주선, 「상법」, 형지사, 2016.
- 유주선, 「보험법」, 청목출판사, 2013.
- 유주선·최병규·김은경,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쟁점사항과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연구보고서, 2013.
- 유주선, “보험모집조직에 관한 법률적 문제-모집조직에 대한 전망과 입법적 개선과제를 포함하여-”, 사)한국보험법학회 2012년 춘계학술발표회, 2012. 4. 27.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제13판, 2015.
- 이필규·최병규·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 세창출판사, 2009.
- 이필규, “독일 보험계약법상의 보험대리인: 독일 보험계약법(VVG) 제43조를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23호, 한국보험학회, 1984.
- 이필규, “영국 보험 브로커(Broker, Makler) 제도와 그의 활동”, 「보험연구」, 대한손해보험협회, 1963.
- 전우현, “보험중개인의 권한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 「보험법연구」 3, 보험법학회, 1999.
- 정준우, “보험중개인의 법적 지위와 그 개선방안”, 「비교사법」 제1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조혜원, “보험중개사 역할 제정립 필요”, 『주간보험이슈』 제105호, 보험개발원, 2007.

최명규, “보험모집보조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독 비교연구,” 『기업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0.

최선웅, “보험중개인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1.

한만영·신호철, 일반손해보험의 도약을 위한 보험중개사의 역할과 법적 쟁점, 『사)한국보험법학회 제54회 보험판례연구회 자료집』, 2016년 8월 29일.

<Abstract>

A study of the development plan of insurance broker

Yoo, Ju Seon

The insurance contracts are very important for the welfare of citizens. The solicitation for insurance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insurance industries. The insured makes insurance contract through attorney or deputy of the insurer. Therefore, the right and duty of attorney or deputy is very important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other words, insurance intermediarie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the insurance practice. There are 3 categories among insurance intermediary. Insurance agent, insurance broker and insurance sales man are the 3 categories. The insurance broker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1998. It is regulated in Korean insurance business law. It has many problems. First of all, the current laws treat insurance broker as a sort of insurance sales man.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current problems of insurance business law in regard of the right of insurance broker. I have meanwhile tried to provide some suggestions about reform of Korean insurance business law in regard of the right and duty of insurance broker. The right to make contract for the consumer and the right to receive premium should be regulated in insurance law. These systems should be improved such as the recognition of the insurance broker's right to receive premium, the right to receive notification of insurance brokers and the right to receive notices, the right to receive insurance claims and the authorization of other insurers or policyholders. Although the insurance brokerage system does not provide the same institutional apparatus as the United Kingdom, it is inevitable to grant a certain right to establish and activate the insurance brokerage system as a specialist group of insurance. However, the award of the right must be accompanied by the responsibility. The change of the legal surroundings about insurance broker are the most significant for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broker. The working field of insurance broker should be ultimately extended.

Key Words : insurance intermediary, law of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broker, reform plan of the insurance broker, right and duty of insurance broker